

대만 비관세장벽 이슈

Taiwan Non Tariff Barriers Issue

대만, 동물성 식품의 농약 잔류 허용량 개정



동물성 식품의 농약 잔류 허용량 일부 개정, 계란류 및 유제품도 포함되어 주의 필요

대만 위생복지부(衛生福利部)가 1월 27일 개정된 《동물성 식품 속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(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)》을 발표함. 이번 개정안은 동물용 사료를 통해 가금류 및 축산물에 축적되는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량을 규정한 것으로, 총 14가지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량 기준을 수정함.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우유 및 유제품, 계란류가 포함되어 있으며, 총 7가지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량이 하기와 같이 변경 또는 추가되었음

농약 명칭	식품 종류	개정된 잔류 허용량(ppm)	현행 잔류 허용량(ppm)
Acephate	우유	0.02	0.1
	계란류	0.01	0.1
Cyhalothrin	우유	0.1	-
	계란류	0.02	-
Dimethomorph	우유	0.01	-
Dinotefuran	우유	0.02	-
	계란류	0.02	-
Famoxadone	우유	0.03	-
Flufenoxuron	우유	0.02	-
	계란류	0.2	-
Hexythiazox	우유	0.01	-

대만 위생복지부에 따르면 농약 잔류 허용량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,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항과 5항, 제44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6만~2억 대만달러(약 240만~80억 원)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. 따라서 관련 식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사전에 개정 기준에 따른 농약 잔류 허용량을 확인하여 대만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
출처

위생복지부(衛生福利部), 發布修正農藥殘留容許量標準, 加強食品殘留農藥管理, 2021. 01. 27